

일本国립공원에 있어서 Park Volunteer활동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Park Volunteer Activities at the Japanese National Park

千葉大学 電子・光・情報基盤技術研究Center*

千葉大学 園芸学部 **

김선희* · 油井正昭**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본의 국립공원은 1934년 濱戸内海, 雲仙, 霧島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면적의 5.4% (205ha)에 28개 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예로부터 토지를 다목적으로 이용해 온 일본에서 는 대면적의 지역을 국립공원전용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재산권, 산업 등과의 조정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을 증진시 켜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생활의 안정과 함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레저가 봄을 조성하면서 국립공원의 이용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이용의 증가는 과잉이용과 개발에 의한 심각한 자연파괴, 다발의 산악조난사고를 유발시킴으로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국립공원관리는 1953년에 최초로 국립공원관리원(후생성) 6명이 현지에 파견된 이래, 2001년 현재 약 200명의 자연보호관(환경성)이 현지에 배치되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 국립공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보호와 관리에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자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것이 Park Volunteer(이후 PV로 표기)이다. 최근에는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키워드로 자연과의 교감과 국제조약에 대응하는 정책이 전개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 PV역할은 더욱더 기대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PV의 현황과 PV의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일본국립공원에 있어서 PV활동의 특성을 밝히고, 국립공원정책에 맞는 PV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PV활동의 현황과 문제점파악을 위하여 PV가 도입된 23개국립공원 35개지구의 자연보호관(레인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PV활동의 사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日光, 箱根지구의 PV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식을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Park Volunteer의 도입과 활동현황

자발성, 무상성, 비영리성, 계속성의 volunteer 원칙에 기초한 최초의 PV활동은 1985년 환경청의 자연보호교육활동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999년 현재 전국 23국립공원 35지구에서 1,808명의 PV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1985~1989년 17지구, 1990~1994년 8지구, 1995~1999년 10지구에 PV가 도입되었으며,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PV활동인수는 최소 17명에서 최대 138명으로 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PV의 모집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V활동은 미화청소(91.4%), 자연해설안내(91.4%), 이벤트보조(71.4%), 자연정보수집(65.7%), 자연정보지의 발행(62.9%), 자연환경조사(34.3%), 자연복원(31.4%), 강연 및 슬라이드상영(22.9%), 지역문화 소개 및 연구(22.9%) 등이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PV활동은 미화청소, 자연해설안내활동으로 35지구 중 32지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화청소활동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항상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그리고, 자연해설활동의 경우는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을 강조하는 현행 국립공원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지구에서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PV활동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구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검토회 85.7%, 연수회 80.0%, PV기관지 77.1%, 교류회 62.9%, 자치조직 62.9%, PV활동 스테이션 45.7%, 지원조직은 42.9%정비되어 있었다. 여기서 PV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토회, 연수회 등은 비교적 많은 지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면, PV활동을 지원하는 시설(PV활동스테이션)과 조직(자치조직, 지원조직)의 정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Park Volunteer제도에 관한 日光, 箱根지구 Park Volunteer의 의식

PV자격에 있어서 日光지구는 만 22이상, 연간 7회 이상의 활동이 가능한 자, 箱根지구는 만 20세 이상, 연간 5회 이상의 활동이 가능한 자를 규정으로 2년간 PV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등록만 한 채 활동을 하지 않는 PV, 연령제한, PV자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것에 관한 日光(48명, 회수율 82.8%), 箱根지구(72명, 회수율 55.8%)의 PV의식을 조사하였다.

日光지구는 연령제한에 대하여 매우 필요 12.5%, 필요 39.6%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불필요의 회답도 33.4%를 보였다. 그러므로 PV의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는 고령자의 안전과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층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활동하지 않는 PV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서는 58.4%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필요없다는 대답은 27.1%로 이것은 버란티어활동이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재등록제도는 79.2%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함으로써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재등록제도의 활용을 기대하는 PV가 많았다.

箱根지구는 연령제한에 있어서 필요 40.3%, 불필요 32%로 의식의 대립경향을 보였다. 활동하지 않는 PV자격의 제한은 77.8%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재등록제도는 77.8%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재등록제도는 양 지구에서 모두 필요한 제도로서 파악되었다.

3. 日光, 箱根지구 Park Volunteer의 만족도

PV관리자의 역할, 연수회, 활동프로그램, PV활동 등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日光지구는 PV관리자의 역할(45.8%)과 연수회(33.3%)에 대하여 만족과 불만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日光는 PV관리에 자연공원미화 관리재단의 코디네이터와 환경청의 레인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리자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PV활동에 대한 지도·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활동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39.6%가 만족하고 있지만, 33.3%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V활동에 있어서는 50%의 PV가 만족하고 있어 다른 항목보다는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日光지구의 경우는 각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불만과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많아 PV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箱根지구는 관리자의 역할에 있어서 만족 37.5%, 어느 쪽도 아니다 26.4%, 불만 25%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箱根지구도 관리자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연수회는 47.2%가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27.7%)과 어느 쪽도 아니다(22.2%)도 높은 비율을 보여 관리자의 역할과 연수회의 만족도에서는 日光와 箱根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활동 프로그램과 PV활동에 있어서는 68%의 PV가 만족함으로써 箱根에서는 활동프로그램과 PV활동에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IV. 결론

일本国립공원에서의 PV제도는 1985년 환경청의 주도로 도입되어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보급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모집요강이 없는 곳이 많으며, 비정기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참가의사가 있다고 해서 PV활동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PV활동은 미화청소와 자연해설안내가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으나, PV활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스테이션의 정비는 아직도 저조한 상태이다.

日光와 箱根에서는 관리자의 역할과 PV활동에 있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수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파악되었고, 활동하지 않는 PV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격박탈이나 자격제한의 방법보다는 재등록제도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PV활동을 위해서는 활동기회의 확대와 함께 PV를 관리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도입, PV활동 시설의 정비, 모집과 등록제도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